

고문관련 기사 모음 Ⅳ

1. 고문 추방은 법 이전의 문제다 - 법정서 자백의 증거능력 배척해야 (1987.1.23.)
2. 국가보안법, 반공법
3. 한승주 외부장관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 (1993.6.15.)
4. 아직도 고문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작은 움직임 (월간 사회평론 길, 1993년 10월)
5. 장기수 건강검진 보고. 40년 갇힌 인간의 육체 (월간 말, 1994년 5월)
6.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인 이근안경감과 대공수사단 김수현경감 등이 불법구금·물고문·전기고문한 행위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4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토록 인정한 예 (법률신문, 1992.3.12.)
7.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 요약 -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영국 옵서버신문 국제앰네스티 빼엘 싸네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인권하루소식, 1994.1.13.)
8. 고문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 (국제앰네스티, 1994.3?)
9. 안기부, 기부사 등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의 불법관행
10. 고문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11.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 구인영장과 변호인입회등이 제도화돼야 (1987.1.22.)
12. 검찰 고위인사 새틀짜기 관심집중 - TK시들 서울·부산세 떠오를 듯, 5·6공 인권침해 인사 물갈이 기대도 (1993.9.2.)
13. 철야신문은 명백한 고문 - 잠안재워 얻은 자백 증거로 인정말아야, 긴급구속장-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견 (1992.8.15.)
14.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 손해배상금 청구절차와 지금까지의 사례. 피해 후 3년이내 국가등 상대로, 박군의 경우는 6천여만원 추산
15.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다 - 출소후 고통의 생계 있는 죄없는 피의자들. 옷벗기고 매질 예사... 아픔 못견뎌 허위자백, 진통제 상용... “무릎뼈 나오고 시력도 나빠져” (1987.1.21)
16. 고문 후유증 심각하다 - 하혈등 만성질환 정신이상 많아, 심한 모멸감으로 인간믿음 상실 (1988.11.16)
17. 고문후유증을 고친다. - 덴마크에 국제고문피해자 치료센터 설립. 대부분 불안·공포로 정신착란증, 심리·사회학자등도 진료참여, 환자 계속늘어 현 시설론 감당못해 (1983.6.24)
18. 고문, 내분·독재국가에 많다 - 대부분 정권유지방편으로 자행, 80년대들어 방법 더욱 악랄해져 (1987.1.21)
19. 고문후유증, 6개월 이상땐 완치어렵다 - 교통사고보다 더 큰 부작용, 정신적 충격은 잠재되어 순간적으로 발병, 빈방 수용·잠안재우기는 최대의 고통 (1987.1.22)
20. “고문으로 간첩죄 조작”... 무기수 이장형씨 석방 서명운동 (1993.2.16)
21. 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 (1987.1.)
22. 고문치료에 최고사형 (1987.1.28)
23. 고문은 없어져야 한다 - 개인의 존엄인격을 파괴하는 야만
24. 정신적피해 평생간다 - 고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987.1.19)
25. 고문 사라져야한다 - 악습이 부르는 악행. 수사관들 상벌민감 과열경쟁 (1987.1.22)

한승주 외무장관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을 위
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1980. 12. 31, 법
률 3318 호).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안법(1963.
6. 10. 법률 549 호)과 반공법(1961. 7. 3. 법률 643
호)을 폐지하고,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형법 등의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새로 제정한 법률
이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① 정부
를 침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② 이러한
목적으로 공산체계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
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2조).
이 법은 이러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자들을 수괴(首魁)·간부 및 기타
의 자로 나누어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
을 권유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도록 되어 있다(3조). 그리고 이 법은 형사소
송에 관한 여러 가지 특례와 보상 및 원호제도
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모두 25 조
와 부칙 4조인 이 법의 편별 내용은 제 1 장
총칙(1~2조), 제 2 장 죄와 형(3~17조), 제 3
장 특별형사소송규정(18~20조), 제 4 장 보상과
원호(21~2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 국가보안법 : 1963
{ 반공법 : 1961
는 통폐합하여
1980. 12. 31 : 국가보안법

이고, 후자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똑같은 모
양의 뼈관(骨管)이다. 막(膜)반고리관은 폐쇄
된 주머니[囊]로 되어 있고, 3개의 관으로 이
루어진다. 이 관들은 전(前)·후(後)·외측
(外側) 반고리관이라고 하며, 어느 것이나 모
두 C 자형으로서 각각 양끝에서 난형낭(卵形
囊)으로 열려 있다. 이 개구부(開口部)에는
각 관에 하나씩 팽대부(膨大部)가 있고 이 팽
대부 내면의 C 자형 팽대통(膨大竇) 부분에 감
작상피(感覺上皮)가 배설되어 있다. 전반고리
관은 측두골추체(側頭骨錐體)의 장축(長軸)에
직각 방향으로, 후반고리관은 그 장축에 평
행 방향, 외측반고리관은 바깥쪽으로 수평으로
돌출되어 있다. 반고리관의 긁기는 지름 약
0.3~0.5 mm로서 관의 내부에는 림프액이 차
있는데, 물이 회전하면 림프액은 흘러서 감각
상피를 자극한다. 끌(骨)반고리관은 막반고

반곡인역 盤谷人易 조선 중기의 학자 성
이심(成以心)의 역서집(易書集). 3책. 일본.
조선 현종 때 편찬. 1779년(정조 3)에 간행. 《주
역(周易)》의 역리(易理)를 밝힌 책. 혼히 《주
역》을 복술(卜術)로만 생각하는 폐단을 시정
하고,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밝혀 역도(易道)
의 근본을 설명하고자 한 책이다. 태극(太極)·
음양(陰陽)·사상(四象)·팔괘(八卦)·육십사
괘(六十四卦)에 대한 경전의 사(辭)와 선유
(先儒)의 설을 불이교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
였다.

반공교운동 反孔教運動 공자의 사상을 자
본주의 사상과 상통한다고 비판한 중공의 대
중운동. 십전대회(十全大會)에서 린 빠오[林彪]
의 죄악성이 공식 규탄된 이후 전개된 비
립정풍(批林整風) 운동이 1973년 8~9월부터
는 린 빠오와 공자를 함께 비판하는 비립비공

반공법 反共法 공산체계의 활동에 가담하
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
었던 우리나라의 법률(1961. 7. 3. 법률 643 호).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의 처벌법
인 데 대하여, 반공법은 그 중 공산체계의 활
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
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1980년 12
월 31일 법률 제 3318 호로 전면 개정된 국가
보안법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반공법은 폐지
되었다.

반공산주의 反共產主義 공산주의에 반대
하고 이를 배척하는 여러 사상의 총칭. 공산
주의가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회지배는 노동
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 사회의 특성
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생산수단
과 소비수단이 사회화되는 데 있다. 이러한

1993. 6. 15., 비엔나

의장, 대표 및 신사숙녀 여러분,

45년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 약 반세기동안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에 있어 하나의 등불이 되어왔습니다.

그러한 이상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의 너무나 요원하여 절망한 때도 있었고, 그릇된 희망으로 설불리 기뻐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로서 우리는 안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고, 또한 오랜 빈곤으로 인해 경제문제를 최우선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바탕으로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위한 행진을 계속 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세계인권회의에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알릴수 있게 된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신세계질서와 인권)

의장,

세계는 제2차 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유엔을 창설하고 곧이어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향한 우리의 최초의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냉전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자면, 제2차 대전은 파시즘에 대항한 전쟁이었고 냉전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끝까지 견디어내어 승리하였습니다.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돌이켜보면,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은 20세기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화 시켰습니다. 그러한 역압적 이데올로기의 종말로 우리는 "자유란 꿀종이다" 라든가, "둘 더하기 둘은 다섯이다" 와 같은 전율할 오월의 구절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자유는 물론이고 거주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 even 무시하는 국가들은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같은 국가들이 여타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냉소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탈냉전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추세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즉 45년전 제2차대전 종전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만큼이나 드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향유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함께, 대량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지역분쟁, 만성적인 빈곤과 저개발과 같은 탈냉전 시대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본질은 인권의 보편성이라든지 발전, 민주주의 및 인권간의 관계와 같은 본 회의의 의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

우리는 인권을 위한 투쟁이 인간본성에서 유래한 것임을 투쟁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류가 마음에 간직하고 열망하게 되는 그 무엇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권의 보장을 위해 다른 인권이 부인되는 것은 정당화 될수도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여정을 하룻밤새에 마칠수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타 과제들과 함께 달성해야 할 길고도 힘든 여정일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적 발전없이 진정한 인권은 불가능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느정도의 경제적 번영 없이는 꽂피기 어렵습니다. 발전과 인권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역적, 국가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특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개발이 인권침해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 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국가와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압적이고 득선적인 태도는 민족주의라는 또다른 강력한 감정을 축발 함으로써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한 비판과 득선적인 도덕주의가 아니라, 동정과 실용주의가 우리의 기본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증진 방안)

의장,

우리는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한 국가의 국제질서로의 통합입니다.

국민에 대해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보의 자유는 언제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국가가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에 통합되면 될수록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직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바탕이 되는 개인 잠재력의 완전한 발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20세기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의 용기와 희생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과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들은 인권규범의 이행에 있어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간단체의 증가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에 긍정적인 정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가가 2개의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한 제반 국제인권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직 이러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가능한한 조속히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UN 인권활동 강화방안)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대한 공헌에 주목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여타 주요 인권협약들이 동 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 인권증진에 있어서도 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세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는데 있어 드문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이 인권증진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인 만큼 지금 이야기로 유엔 인권활동의 메카니즘을 강화시켜야 할 호기라고 하겠습니다.

유엔은 인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임명하자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내 다양한 인권기관의 활동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대량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긴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유엔 활동이 강화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아동, 소수민족, 원주민 및 장애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계획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한국의 약속)

의장,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내에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절차를 추진중이며, 나아가 이러한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인권보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신외교 정책기조를 천명하면서 인권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신외교는 민주주의, 자유, 복지 그리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의 선언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 평화와 발전의 궁극적인 보장장치라는 굳은 신념위에서, 민주주의 이상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여 그 나름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1998년에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5년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보다 명확한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인권이란 목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새롭고 찬란한 인권의 장을 열었다고 후세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의 제목에 의하면 규제를 받아야 할 파견업체 사장들은 반대를 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찬성을 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업체 사장들은 어서 규제법을 마련하자고 하고, 노동자들은 보호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우째 이런 일이...

고용보험법은 근 1년 동안의 노·사·정의 절충과 합의를 거쳐서 준비되었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노동부는 거기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의과정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근로자파견법이라 는 뜨거운 감자를 슬쩍 끌어넣은 것이다. 그것도 법안이 상정될 정기국회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래서

이날도 신계륜 의원은 “노동계에 엄청 난 파문이 일 걸 빤히 알면서 각계의 여론수렴이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에 필요한 시간도 주지 않고 촉박하게 법안을 내놓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불만의 한자락을 내비쳤을 정도다.

최근에 서울지역요식업노조에서는 요식업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신청서를 낸 적이 있다. 그것은 반려

되었다. 분명히 현행법에 노동조합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도. 그러면 근로자파견법을 굳이 만들려는 노동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 불법인 근로자파견업체를 양성화해주기 위한 것, 바로 그것 아닐까? 물론 정부가 상정하는 법에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그렇게 꽁수를 쓰다니. 이건 체면에 관계되는 일 아닐까?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작은 움직임

아직도 고문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신보연 /본지기자

지난 8월 23일 김근태씨 고문경관들이 법정구속되었고 그 이전인 8월 7일에는 김근태씨에 대해 국가가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간 소위 ‘3대 고문사례’로 일컬어지던 사건 중 권인숙씨, 고 박종철군 고문사건의 종결에 이어 김근태씨 사건마저 종결됨으로써 이제 고문피해문제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문제의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간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속속 피해자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나이 만33세인 문국진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실박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정신병

원에 입원해 있다. 문국진씨는 대학 2학년 때인 8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1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다. 그는 86년에도 소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받다 차수를 했는데 이때 3일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섯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는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 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려고 누워 있는 부인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시달리다보니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문국진씨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의 담담했던 심경은 생활고와 거듭되는 남편의 입원으로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다.” 이미 오래 전에 받았던 고문이 아직도 그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단란해야 할 가정까지 갈길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90년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지 10개월여만에 분신자살한 고최동씨와 그 가족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구속 후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 등 정신적 고문을 받았던 그는 발작과 실어증, 극도의 무기력증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출소 전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분신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 이후 부친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며 그동안 운영해오던 동대문시장의 가게도 정리하고 바깥출입을 않고 지내다가 최동씨의 사십구일제를 지낸 지 열세만에 학병으로 숨졌다.

군사정권 하에서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던 사람치고 간단한 고문이니마 안

노동조합은
도록 허용이
로자과견법을
도는 무엇일
견업체를 양
것 아닐까?
법에 반대가
무리 그렇다
렇게 풍수를
는 일 아닐

고문이 아
니라 단란
어놓고 있

속되었다
자살한 고
더욱 심하
안재우기
는 발작과
정신질환
병원에서
살하고 말
사람 만나
오던 동
와같출입
집구일제
죽겠다.
'이라
다 안

당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운동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모욕과 구타는 기본적이고 심한 경우 온갖 악랄한 고문까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아직도 날이 궂으면 온몸이 쑤시고, 우울증과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속되는 고문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문국진씨는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추모제'를 보고 나서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달라"며 통곡했다. 이 모습을 보며 부인 윤연옥씨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지를 생각하기에도 지친 삶이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고 살아나갈 것"을 결심하고 평소 문국진씨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어왔던 연대동문들과 주변의 친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백승현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낙중씨 간첩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가 집단폭행을 당했던 전희식씨가 합류했고 고 최동씨 가족도 합류할 것인지를 논의중이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많이 합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전과 약간 다르다.

"문국진고문피해대책위는 앞으로 법 정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이렇게 더이상 고문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테모나 농성 등이 주된 활동방식이었을 텐데 이제는 법에 호소하고 있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모욕과 구타는 기본적이고 심한 경우 온갖 악랄한 고문까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문은 당시에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고문피해자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단란해야 할 가정까지 깊갈이 찢어놓고 있다.

3대와 소리



다.

3대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가해자구속과 국가배상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도 별로 없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기 힘든 고문피해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호소문의 글구대로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

야 할 것"이다.

문국진씨 고문피해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법에 호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가 일일이 가려지는 과정이야말로 말로만 고문수사금지를 백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디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이 작은 움직임이 성공하기를 빌어버리지 않는다.

장기수 건강검진 보고 40년 간의 인간의 육체

이 글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된 출소장기수 39명의 종합건강검진 결과보고서다.
40년간 간혀 있던 인간의 육체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김지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의사)

장기수들에게는 왜 암이 많은가

지난해 6월, 38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이래선씨가 진행성 위암으로 운명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장기수 김광길(1923. 3. 26생, 33년 복역, 1991. 4. 28 사망), 김대봉(1914. 1. 11생, 27년 복역, 1992. 1. 2 사망), 박관수씨(1918. 9. 10생, 24년 복역, 1992. 1. 18 사망) 등은 위암으로, 이기상·최인정·조해수씨는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바로 얼마 전인 4월 1일에는 32년의 옥고를 치른 김광삼씨가 출소 후 계속 병마와 싸우다가 음성 꽃동네에서 폐암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밖에도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얻은 지병으로 숨진 장기수들은 여럿인데 특히 그중 김현진, 김병인, 이복남씨는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평균연령이 60세를 훨씬 넘고, 평균복역년수가 근 30년에 달하는 장기수들은 장기간의 엄중 독거수용과 73년부터 75년에 걸친 살인적인 폭력적 전향공작에 의해 누구나 두세 가지의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대부분 고령과 오랜 감옥생활의 후유증으로 얻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들의 심각한 의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출소장기수들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로 하고 5차년도 특별사업으로 우선 예방적인 차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에서 11월에 걸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장기복역한 고령의 장기수를 대상으로 진

찰,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를 주내용으로 한 종합검진을 시행하였다.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지만 지역관계로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검진이 가능한 39명을 대상으로 했다. 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검진받은 출소장기수 연령별 분포

80세 이상	3명
70~79세	14명
60~69세	16명
50~59세	4명
50세 미만	2명
총계	39명

<표 2> 검진받은 출소장기수의 복역년도별 분포

40년 이상	1명
49~30년	14명
29~20년	14명
19년 이하	10명
총계	39명

<표3> 검진받은 출소장기수의 주요 질환 분포

위장질환	23명	폐질환	11명
심장질환	16명	당뇨병	1명
간장질환	12명	피부질환	5명
신장질환	3명	악성종양	2명
혈액질환	2명	요도질환	2명
관절염	10명	이비인후과질환	2명

병 없는 장기수는 하나도 없어

표 1, 2에서 보듯이 검진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5세였고 평균복역년수는 28년이었다(표 3에서 보듯이 같은 연령의 보통인구에서보다 질병의 종류와 질병보유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위장질환·심장질환·간장질환·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악성종양도 두명에게서 발견되었고 한 사람이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보통 교도소내에서는 사회적 격리·구금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과 열악한 급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비좁은 감방에서의 절대적인 운동부족, 만연된 비위생적 환경, 밀집된 집단 생활조건, 소내 폭력·고문 등의 각종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질병의 유병률이 높다. 그럼에도 행형법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수시검진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고,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질병이 발견되어도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현실적인 의료시설의 미비, 야간응급대책 미비, 부적합하고 한정된 사약(외부에서 차입해준 약이나 본인이 구입해서 먹는 약) 품목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재소자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교도소내 의료현실에 덧붙여 장기수들에게는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특수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출소장기수들의 건강상태가 특히 나쁜 것은 첫번째로 구금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는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를 '장기복역양심수'(이하 장기수)로, '20년 이상을 복역하고 출소하지 못하는 장기복역양심수'를 '초장기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소자의 경우에는 무기수라도 길어야 15년에서 18년이면 모두 석방되는 것이 관례이며 10년 정도 복역하면 누진처우제도(재소자를 범죄의 질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준한 처우를 하며, 부여되어 있는 일정의 의무소각점수를 반성의 정도나 작업의 양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단계별로 처우와 석방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에 의해 우량수로 분류되고 완화된 소내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행형상의 누진처우 혜택대상에서 제외시킨다"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령 제111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1항 5호'에 의해 누진처우나 가석방 등 행형상의 기본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20~40년 이상의 초장기 구금상태가 되는 것이다.



장기수들 대부분은

위장질환·심장질환·간장질환·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악성종양도 두명에게서 발견되었다. 한 사람이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교도소내의 열악한 처우와 불량한 의료조건을 생각할 때 형기가 길수록 수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문과 인간의 육체

두번째로 장기간의 독거수용과 소내 취업금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25조, 26조에는 되도록 수인의 독거를 금지하고 독거하더라도 독거수용 기간을 2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전향수는 여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20~40년이상 무기한 폐쇄독방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소내 취업이 금지되어 출역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홀로 조그만 공간에 격리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생명기능이 와해되어 단 며칠 만에도 정신적·신체적으로 폐인이 되기 십상이다.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은 고사하고 절해고도의 외로움 속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평 미만의 관 같은 폐쇄독방에서 수십년간 독거생활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인

전

민중가
한 대중
들을 노
대 민중
넓은 ○
92년을
그 '잘
하기 시
바깥 세
계 어루
터 민중
요의 상
고 있는
동스럽기
구하고

「출장
세대 작
화카드
하고 작
나긋하
최고의
로 이라
민중가
가요의
는 점에
경험을
카드로
자의 능
이 노
로 주목
라드 가
하는 전

간으로 살기를 금하는 명백한 살인행위인 것이다.

세번째로는 의료상의 불리한 처우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비전향수는 엄중 독거수용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중환자일 경우에도 병사로 읊기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동료들이 병수발을 드는 것도 금지되며, 꼭 외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거부되는 일이 다반사다. 그리하여 위급한 상태로 방치된 채 그대로 사망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독방에서 병사한 경우도 많았다.

네번째로 강제전향고문의 후유증이다. 사상전향제도는 한 국가나 권력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 인간 내면의 세계를 폭력이나 제도적인 억압장치를 동원해서 강제로 바꾸는 제도로서,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일제에 의해 식민지 조선의 독립과 민족해방운동 탄압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족적인 제도다. 해방 후 잠시 사라졌다가 '일본정신 확립'이 '국가관 확립'으로 바뀐 채 1955년 법무부통감에 의해 부활된 바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비인간적인 제도는 그간 수많은 개인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단체제를 민족 각 구성원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민족화해의 전망을 부정하고 민족분단을 고착화·영구화하는 구조적인 기구로 작용해왔다.

1973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전향공작 테러가 시작되어 상상하기도 어려운 살인적 고문이 자행되었다. 이 와중에서 많은 장기수들이 흉악범들에 의한 집단구타, 모진 고문, 폭행, 환자치료 금지, 사약 압수·금지, 기아급식, 운동시간 말소, 살인적 강제급식, 항의자결 등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비록 이 기간중 목숨은 겨우 건졌어도 고질적인 질병을 얻게 되어 출소장기수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이들의 건강은 지극히 열악한 상태이며, 게다가 청춘은 물론이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빼앗긴 채 고령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실질적인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활동신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이 족쇄처럼 따라다녀 여전히 알맞은 의료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눈부신 현대 의학과 권력의 생명 말살

오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30년 만에 이 땅에 들어선 문민정부는 몇몇 정치인들의 뛰어난 자질이나 고도의 정략이 아니라 수많은 양심수들의 처절한 투쟁과 희생, 민중들의 고단한 싸움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정부와 우리 모두는 오랜 투쟁의 와중에서 고귀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죽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교

도소에 감금되어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에게 절대적으로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 국제화가 진정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주정부의 출범을 위해 그동안 사투를 벌여온 양심수들의 정당한 사면·복권·석방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의 철폐,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장기수를 또다시 옥죄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폐지 등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쁜 세균으로 깊은 부위는 완전히 도려내야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듯이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자기반성, 과감한 자기혁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려 3백여명의 양심수와 74명의 장기수(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경우가 29명, 70세 이상이 6명, 최장기수가 44년)가 아직 교도소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지난 일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2백명이 훨씬 넘고 있는 실정이니 문민정부의 앞날을 진심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통일에의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하루바삐 분단의 산물인 장기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인류는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연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돈을 들여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성과 또한 눈부시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건강한 생명을 지키고 연장시키기는커녕 인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고문·폭력·살인 등 부당한 생명파괴 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용인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바로 지금 이 땅에 국가권력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한동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죄일 수 없는 것 아닐까.

출소장기수의 건강문제에 대해 양심수후원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한다. ■

양심수 후원회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금을 보내실 분은 다음 구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영국 읍서버신문 : 국제앰네스티 빠엘 싸네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93년 12월 12일,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빠엘 싸네 사무총장은 영국의 유명 일간지 Observer(읍서버)지의 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춘 인터뷰에서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는 확실히 더 불안한 상태다. 지구 모든 곳에서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싸네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 정부들이 인권 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이 점점 세련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정부들은 자국의 피자워 어린 인권침해기록이 그들의 국제적 위신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인권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긴다. 거짓말을 반복한다. … 이들의 위선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의 외무장관은 ‘저는 한국이 인권이 꽃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실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주 후에 남한 경찰은 저명한 인권운동가 노태훈씨를 체포해 10일동안 협박하고 짐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배부름의 테제」(‘인권보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정면으로 맞상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은 땀을 땀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한다. 고문과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비교해 상대적 중요성을 논해서는 안된다. 양자가 모두 균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태훈씨는 한국 외무장관이 위 연설을 하는 비엔나 회의현장에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것임.

우리를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왔을 때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밖에서 열 채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간힌 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는 공장 사장이나 관리자들로부터 “빨리 빨리” 또는 “이 시키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 쯤은 쉽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노동자들은 잣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달씩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에게 월급을 달라는 이유때문에 또다시 맞고는 공장에서 도망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들은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항의농성을 하러온 우리들중 대부분은 손가락이 몇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숴졌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사장은 사고 당시 지불한 병원비가 아까워서 불구가 된 한 팔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입원비가 들까봐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도 당일 밤만 전문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부터는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여 지금은 손가락 절단부위의 뼈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뿐만 아니라 일한 월급조차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송금해달라고 말긴 개인돈이나 항공권료까지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중 험 나라안 쉐테스타(네팔인)씨는 사장이 보상해 주지 않자 상담소를 찾았다는 이유때문에 회사에서 구타를 당하다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헴씨의 개인짐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상담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들과 함께 기업주를 만나고, 경찰이나 노동부에 요청도 하였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때문에 모든 보호를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출국할 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200여만원에 이르는 벌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설은 이 한국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땅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주시고, 사람으로, 이웃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Ali Amjad 등 방글라데시 3명
Manjo Thapa 등 네팔인 9명 등 13인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고 박종철 열사 7주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양천구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조사중

연초부터 재개발지역 대상 주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앉을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오전 9시 서울시 양천구 신정 제5지구 재개발지역에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적준개발 '직원' 70여명이 신정 7동 제5지구 재개발지역(일명 칼산 재개발지역)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하자 이에 「칼산 철거민 대책위원회」(공동 대표 문근식)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임산부인 유남숙씨 등 주민 3명, 적준개발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주택 3채가 전소 혹은 반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근식, 김경선, 양상호씨등 주민대표 3명이 현주전조를 방화,

치상 협의로 양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양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에 의하면 경찰은 문씨 등에 대한 구속을 풀신할 예정이다. 문씨 등이 받고 있는 '방화' 혐의에 대해서 신정 재개발 지역의 한 주민은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적준개발이 집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주민들이 불을 질렀

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문씨 등에 대해 치상 협의를 두고 있는 반면 신정7동 주민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양천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19일 이 지역에 대한 철거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등 요구

네팔·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13명은 *체불임금 지급 *국내 산재 보상법에 준하는 산재치료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10

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호소문에서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며 농성이 유를 밝히고 있다(2면 참조).

또 이들은 잣은 구타와 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지난 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미국땅에 나가 고난을 받았던 심정을 생각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자신들을 사람으로, 이

「인권하루소식」이 구독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같이 인권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늘어나는 발송비의 부담등으로 부득불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구독료 :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선택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인권하루소식」을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팩스가 없어 받아보시지 못한 분이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1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구독료 위와 같음).

<이달의 주제>에 글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 달의 주제는 고문입니다. 고문근절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글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로 맞아주길 호소하기도 하였다.

'소사장제' 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

경기도 미금시 소재 '경기유리' 주동희(41세) 위원장은 11일부터 노조탄압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소사장제'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유리'(사장 엄기영, 61)는 지난해 12월 31일 노조비상총회에서 '소사장제'는 노조와 검토한 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월간 「여성동아」는 지난 한해동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에게 주는 '여성동아대상' 제11회 수상자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을 선정하였다.

「여성동아」는 최영애씨가 지난 91년 4월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한 이래 성폭력문제를 여론화하고 피해자를 돋는데 앞장서왔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 알림 ◆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

·13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양심수 군문제 해결 기금 마련 토종꽃 등 판매

·지리산 토종꽃/북한술 및 진도홍주 판매(즉시 배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784-4665)



국제 앤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94년 3월호



이 기사는 정치적 기관, 종교, 지위와 영향력 등과의 관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어떤 사람의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게 되는 행위나, 행위를 유발시킨 동기가 그들 자신에게 있든지, 정부 당국에 있든지 간에 또는 폭력을 사용하였든지 사용하지 않았든지 간에 앤네스티는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정치"와 관련된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적 수인의 개념은 양심수 개

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앤네스티는 활동대상 수인들의 견해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 앤네스티는 정치적 수인들이 수감된 동안 특별한 상태나 조건을 누려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앤네스티는 그들이 수인복을 입는 것이 문제되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앤네스티는 모든 수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수인들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려하여 적용되며, 활동대상에 대한 주요활동을 분류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수인의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활동의 전략상, 일반수인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까지 수임사항에서 유보하고 있다.

고문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

고문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

1979년 12월 17일 채택한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유엔총회는 경찰과 법집행공무원들이 존엄하고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유엔총회는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였다.

사법행정과 체포, 심문, 구속 과정 등을 수행하는 경찰의 임무는 어려운 일들이다. 이러한 임무들은 자주 갈등과 극도의 제한범위안에서 수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임무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고문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부여받고 있다.

80년대의 고문현황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에서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에게, 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또는 당사자나 제삼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제재에 내재되어 있거나 부수되어 발생하는 고통 또는 괴로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조)"

고문은 세계인권선언 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7조 등 국제적 규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 자행되고 있다.

"팔십년대의 고문현황"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98개국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일련의 국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협력과 존경을 받는 경찰들이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개별경찰공무원이나 경찰단위로 인해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다.

경찰의 의무

국제인권규준들은 경찰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지침이 된다. 모든 경찰공무원들은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고문은 유엔, 유럽의회, 미주기구, 아프리카 통합기구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어떠한 긴급상황에서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

■ 국제기구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규준들중의 하나인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법집행공무원들이 협박이나 상해 그외 암묵적인 고문을 자행하거나,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부명령이나 예의적 상황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문은 대개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문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고문금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수인에 대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호 계속)



91. 10. 18

안기부, 기부사 등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질차상의 불법관행

1. 연행 및 구속과정

(1) 영장제시는 물론 사건구속영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연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등은 이를 임의통행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되풀이 하고 있다.

(3) 연행될 당시 구속사실(구속의 이유는 물론)과 번호인 신임권을 고지받는 경우가 없는 상태이다.

(4) 실제 구속영장의 발부는 연행후 48시간 전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며,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는 피체로 부터 영장 청구시 까지의 수사기간 동안의 수사질과로 부터 나온다.

(5) 구속후 유치장소는 안기부의 경우 경찰청, 기무사의 경우 (서울)

국방부 현병대 유치장으로 기재되나 실체 위 유치장소에 있는 경우는 영장발부 직후, 변호인 및 가족면회시, 감찰증치시에 불과하다.

2. 변호인 접견 및 가족등의 면회

(1) 영장일부 이전에는 변호인 접견 및 가족등의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많은 경우 수사초기 단계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피의자가 안기부의 수사의도에 반하여 소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접견을 허가하지 않는다.

(3) 변호인 접견도 접견 횟수등에 있어 실제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4) 접견시간은 일반 구치소등과 비교하여 짧은 편이다.

- (5) 접견시 수사관이 입회하여 접견내용을 메모하며, 접견장면을 사진 찍는 경우가 있다.
- (6) 번호인 아닌 자에 대한 접견은 더욱 제한되는 형편이다.

3. 가혹행위
- (1)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의도에 따라 자백하지 않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가혹행위가 있음.
- (2) 가혹행위는 수사과정 초기에 집중되어 피의자로 하여금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함.
- (3) 가혹행위의 방법은 상처가 남아 추후 고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과로움을 극대화 시키는 짐
안재우기, 기합, 발바닥
때리기 등이 자행되고 있음.

(4) 이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이 항의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지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보복적인 가혹행위가 가해짐.

(5) 이러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자술서 등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됨.

(6) 가혹행위 후 자술서를 먼저 쓰게하고, 이에 맞추어 피의자 신문조서
를 정리

(7)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주장을 빙아 틀어는
경우가 거의 전무함.

(8)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검찰송치후에도 방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1,2회 피의자 신문조사)

4. 피의 사실 공표

(1)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상례이다.

(2) 공표 시기는 연장 발부 시점(연행 후 2일 정도 지난)부근이다.

(3) 공표 내용은 수사기관의 주사의도이며 객관적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

(4) 또한, 그 후 송치나 공소 내용과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面：3
版：2

載：

拷問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고통당한 사람이 어떤 심정의 문제는
제가 치우려고 아니다. 그 고통을 보
살피 염마간의 금전으로 훨씬 더 아
다. 韓國政府는 金權秦씨가 국가를 상
대로 金 산하 바상주 사전판정을 두고
그런 뜻이 밝혀져 있다.
『獨裁者』라는 제도를
인하여 국회의원이 상황에서 신체적 정
신적으로 빠져나온 고통을 받고
그 옆에서 억제할 지를 수 없는 상황을
남기게 되어 있어 그 상황의 충격에서
슬픔이 끊어지지 않다.『나』는 고통당
한 사람이 염마 간호의 금전으로
나마 그 손정을 배상하고 위자료를
가졌다.『국민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 뜻에 밝힌 것이다.
『獨裁者』의 국권을 하지 않고『국민대통령』
회복이나 선수의 염마금전으로 의한
고통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정한 것뿐이다.

얼마나 어렵다가 고통당한 사람에게
다. 또다시 고통당한 우울증이 전개 없
는 자리를 염마는 놔도 한 번 고통당한
경우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에서 떠나
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나 잠
들었을 때나 그 고통의 상황을 떨
쳐버리지 못하고 살피고 끄집어쓰며 심
신을 헤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고통의 치유를 위해서는 특별
한 고통 전문적인 치료법이 필요하
지만 외로운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獨裁者』는 고통당한 사람에게
금전으로는 염마 간호의 금전으로
5백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취 입증증정 등으로 각각 5백만 원을
할지 4천만 원을 하지 않거나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대사지법이 판결을
고통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정한 것뿐이다.

고통으로 인한 고통은 그 혐오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을 수단으로 유린된 政治權力
의 악행을 받은 사회전체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89년 6월의 檢(檢察) 설교로
사건과 결론 11월의 朴鍾哲(朴鍾哲) 고문
사건의 솔태해상판정을 비추어 보면
고통의 피해자는 넓은 의미에서 유포
된다 할 수 있다. 이 고통의 막료으로
부터 윤사화가 벙어나기 위해서라도 고
통당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
법이亟히 수단을 잡아야 한다.

그 첫째의 방법은 고통을 진정화한
수단으로 고통에 치유우지의 수단이
로 살을 빼서 그 치유자에게 전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서 진정화한 위자
료를 받는다. 求償을 신속하게
행사해야 한다. 고통으로 인한 고통의 위
자료를 국가만 부담한다면 그것의 제작
과 유통 비용이 많고 세금을 내야하는 주
민에게 이해의 부담을 지우는가 아니겠
는가.

둘째 고통자에 대한 예방학적 치료법
다. 고통자를 치료하는 것은 고통당한
피해자를 보상하고 위로하고 치유의 투
자가 아니다. 진정한 法의 치료법을 확립
하고 사회전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통자
는 적극 치료되어야 한다. 고통
고통기술을 구현하는 球根安(球根安)을 꼽
걸거해 치료해야 한다. 전통이 후세의
도파를 계속 허용한다면 그것을 지을의
權力이 法의 지배를 의뢰하는 것이다.

考問의 종식을 위하여

부드러워지니
제도화되어야

朴緝哲의 죽음은 고 문을 비롯한人权의 침 해가 「군전의 불이」 아 니며,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生 存」의 문제일을 거듭 실 갑자기 한다. 이제 그의 죽음을 우리 人權의 예 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의 를 말할 사람은 없다. 인자의 생명과 그 존엄을 유린하는 고위의 근정관은 물론 학부 가지 밤안만 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人權을 스스로 지키는 국민의自救정 신이 뿌리내려야 하며 국가권력 또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체질로 틈바꿈되어야 한다. 그 종자자의 체질변화가 요구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된다면 현 행의 法制만으로 고문은 빨리 불이 수 없다. 그러나 고문을 금지하는 현 법의 理據을 비롯, 갖가지 惩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 고문은 자행된다. 그보다면 韓美의 聚散으로 고문의 탄생에 제동을 걸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유예할수는 없다. 차례대로 말한다면 「우선『이야기문화』

의 경후만 하더라도 「장성예례」를 「이의동행」으로 위장한다는 사실이 떨려
하다. 임의 아닌 「이의동행」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떠밀이 떼시포 구이령장
의 활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묘되는 것은 路主수사의
시정이다. 릴릴수사는 인장을 고립투
원한 상황에 가루어 넣는다. 그자
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
도 감지할 수 없다. 고로는 언제나
차단된 멀집에서 빛어진다. 적어도 透
視가 가능한 수사실에서 실물이 제도화
되지 않으면 고문의 탈선을 제동하
기 어렵다.
별로되는 비밀행장제도도 국도로
제한되어야 할것이며, 협사과 의자의
구인과 신물과 함께 서부터 변호사의
입회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피의
자라도 그의 방어권을 위해서 수사는
물론 공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고의자의 불리한
점황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고문의 위험
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보
장책이다. 고문의 평생의 증
거와 증언을 넘겨 놓지 않는다. 대구
나 법률전문가가 입회하면서 어느 경
우에도 고문의 법적 효력을 저지르기는 어
려울 수 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부터의 범호인 활약은
경찰의 경찰수사를 확진하는 요인의
로도 부상하는 편이었다. 확정된다. 손
수문 자백만으로 범호는 탄생은 고
물의 유혹을 끌어들인 아그라 경찰수사
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다. 그런 뜻에
서도 범호인의 체면을 제도화하는 걸
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밖에 언론윤리를 다루게 하는 특
별검사제 도입 신설법을 요구하는 법
조회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바 権力양
사전의 정부감독으로 성공률의 향
의를 일부나마 인정하면서도 관련정책
관을 기소유예한다는 전통의 더욱 류를
변경시켜 도록의 풍랑을 보태는 근거

절도로 인권보호법제기구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의미 있는 추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법의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부의 인권기구는 그 실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상대적인 보호기구나 지속적인 예의 필요성을 전제로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보다 철저하고 시급한 과제는 임시국회의 속임으로 고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연무만을 거듭하는 들판은 없다. 조속하고도 철저한 경찰이 내려져야 한다. 고문은 이미 내일로 기워도 좋을 문제는 아니다.

－구인영장과
번화이야기의 제
拷問의 종식을 위하여
朴鎮哲의 죽음은 고
물을 비롯한 人權의 침
해가 「간전」 불이 아
니며,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生
存」의 문제임을 거듭 실
감케 한다. 이제 그의
죽음은 우리 人權의
수령이 되어야 하며, 고문을 멈춰야 하는데 이의
적 전통성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의
의 폐단을 허락하고 「
의制圖」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아고 「
기 위해서는 時限이
의 활용이 제도화되어
다음으로 육박되는
시정이다. 밀실수사는
원한 살육에 가루연기
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
도 감시할 수 없다.

경찰의 과학수사를 충진하는 요인으로도 공헌하게 될것이 분명하다. 솔루션은 자백에만 의존하려는 탐성을 고분의 우복을 뿐 아니라 과학수사의 경계를 키우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서도 범호인의 참모를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야 하다.

고문 後遺症에 시달린다

108 -

拷問 피해賠償 받을 권리 있다

손해배상금 청구절차와 지금까지의 事例

被害후 3월이 되國家등 상대로
사구의 경우는 6千여 萬원 推算
한국 역사에서 무죄를
다로 손해법상률 청하는 경우

지만 액수에 차지되어 비인간적인 고문에 의해 유통이 되어진다. 이를 통하여 해적을 저지하는 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는 그들의 손에 네로 되어 있다. ◇ 구주 협약 ─ 법정시한은 해 및 가해자를 안으로부터 해제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할수도 있으나 기해자를 상대로 했을 경우 잘못하면 승소해도 배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하려면 유리하다.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東亞日報社調查部

6개월이상면 完治어렵다



A high-contrast, black-and-white photograph of a person's face, heavily shadowed and framed by a grid pattern. The person appears to be wearing a dark cap and has a mustache. The image is grainy and has a high-contrast, almost stencil-like quality.

고문후유증은 상당기간후에 나타나
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나 보상의 시기
를 놓치는 수가 많다(사진은 고문 후
로마 법정에서 진술하는 젊은이).

교통사고보다도 더 큰 부작용

정신적 충격은 잠재되어 순간적으로 발병

빈방 수용·잠안재우기는 최대의 고통

“고문으로 간첩죄 조작”…무기수 이장형씨 석방 서명운동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될 대사 면을 앞두고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이 지난 84년 조총련 관련 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장형(61·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씨가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이라며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한 최병모 변호사도 재심신청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요원들에게 연행된 것은 84년 6월 15일, 제주항에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 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은 그는 조총련계인 속부(일본 거주)의 자령을 받아 73년 6월부터 82년 10월까지 20여건의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고하고 82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5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 중이다.

이씨는 한국전쟁 때 해병대 장교로 참가해 금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73년말 한경면 고산지역 예비군 중대장이 된 뒤에도 대통령·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 표창 등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중인 이장형(61)씨에 대한 석방탄원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73년부터 고산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지낸 이씨는 6·25 때 금성무공훈장을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각종 표창을 받은 인물,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씨가 어느날 갑자기 ‘간첩’으로 둔갑한 것이다.

가톨릭 신자인 이씨는 지난 90년 2월 한 신부에게 보낸 ‘봉헌 속의 기도’라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는지를 폭로했다.

이씨는 이 글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긴 채로 칠성판에 묶여 고문을 받는 등 67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면서 “고문기술자인 수사반장의 얼굴만 기억할 뿐 이름은 몰랐으나 그뒤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고문경관들의 얼굴사진을 보고서

야 그가 이근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아내와 딸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지난 8일 최 변호사와의 면회에서 “67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모슬봉 레이다기지 등을 아느냐’고 물어, 안다고 대답하면 그렇게 쓰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내가 밀입북한 것으로 되있는 82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같은 마을 출신이며 고교동창인 좌아무개씨를 만난 적이 있고 사촌여동생의 집에서 묵었다”면서 밀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함께 끌려가 대공분실에서 37일 동안 조사를 받았던 이씨의 삼촌 이동우(63·제주시 이도2동)씨도 “수사요원들이 종이를 주면서 대접을 모슬봉에 세워진 레이다기지를 그려보라고 해 그렸더니 조총련계 친척에게 기밀을 탐지해 보고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으나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말해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사제단은 교구 차원에서 받은 서명을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 / 허호준 기자

聯
系
人
名
單

103
202

114
165
2.
16

5
5
5

4
4
4

【제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威嚇·구속의 부당한 장기 투缧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
라고 인정될 때 이를 유죄의 증
거로 삼을 수 없다」(자백의 증
거^{证据}「형사소송법 제309조)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식
속에 판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
는 보호하는 자가 혐의의자 등
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뜯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체포·
구류의 가중처벌^{附加刑} 제4

지금까지의 事例를 살펴본다

월 치안부 대공수사단에 연행 된 金懶叢(39)는 경찰조사과 정에서 10여 차례 전기고문·물고 문·고추가루고문·솜풀고물을 달달했다고 주장했다.
『친일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외부 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하루 5~10시간씩 전기고문·물고 문을 달달했다. 그들이 전기고문을 할 때에는 발가벗기고 놈을 가린 채 발목과 무릎·허벅지·배·가슴·머리·가슴·사탕구니 등을 뿌리고 밟아 천회를 겪하였다.』(金懶의 고피해보상)

월6일
전주 충장
현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자들이 놀기를 들어대며「죽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불쌍하자 곤봉으로 머리의 어깨를 마구 때려 정신을 잃고 까무라쳤다』(이상 金씨의 고내용)

이
마땅한 통고문사상, 인정도
모로 일회성이 없는 자백을 증거로
삼을수 없다』(1심 무죄이유)
『고씨의 경찰서에 고문에 의
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없고, 검찰에서의 자백도
법정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없다』(대법원 무죄이유)

富川署사건 高法서 性폭행부분 구체 認定
金根祖씨사건 관령경찰 服役…국가서 위자료

電氣·물拷問 주장 法院서 인정안해
「拷問 自白」 증거안된다… 無罪 판결
維新때 당한 8代 13명이 폭로會見

금씨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국가 측의 판결을 빙어인 5백 8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뒤 경위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험 사, 8백 36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다. 72년 10월 유
野黨 의원 고문 신이후 야당정 치인에 대한 관
계기판의 고문이 치행하고 75년 2월 28일 당시 고문을 달했던 야
당의 법률이 폭로 회견이 있었다.
당시 회견에서 밀표된 13명은 李世圭 趙淵夏 李鍾南 姜根鑑 崔
炳佑 金漢洙 金漢永 金敬仁 趙
尹衡 朴鍾律 羅碩冕 金相賢 洪
英基씨 들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8代 국 히의원 이었는데도 연예하지 마자 기우고 의사에 손발을 끓이자마자 물 고문을 달거나 폭행을 달했다. 〈金容日기자〉

「拷問구지特加法」 적용된적없다

中 央
구 혐발이나 대법원에 의해
죄가 확정됐다. 구속되기 전 영장이
일간 허용된다. 결제관들이 11
해 위해 물을 빼기 위해 물고금을 하다이
위로 자빠졌다고 진술했다.

金檍泰씨 사건 尹노파被殺事件

野黨의원 고문

東亞日報社調查部

三

ପ୍ରକାଶକ

拷問致死에 최고死刑

大韓辯協서 特別法제정을 건의

殺人과 같은 最高刑으로

수사과정에 변호사 立會明文化도

特加法은 無期 3年 징역

결기위해 수사기관의 고급인사
사를 살이행위로 보아 최고
신설하는 내용의 「부제법제정
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률 축진치료 한 경비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변호사임원
용직회에 하여금 회복활동
에서의 변호사 일회권회복활동
과 함께 고문방지에 의기적
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있
◇국회현장=법개정률 고문로
전에 대한 담화한 의지를 전
끼기 위해 고문행위자를 최
고 사례에 까지 처벌수 있도록
하는 「고문·불법체포·감
류방지에 관한 특별법」
번이상의 짐에 처할수 있 3

◇법호사 입관을 통한 법 해
죄 // 범법은 고급방지의 실효
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학자나
검찰의 감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기대류에 법호사의 제3권 활
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입관을 통한 법 해
설도 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혐의 1~39조는 검
사의 입관을 통해 철무·진부·집
행·방해·단 그 명령을 5년
준수치 않은 경계를 5년 규
정하여 철무에 철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수가 없어
점하고 대체로 같은 조
법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법호사 신선행해야 한다는 것.
또 법호사 면허 빙해 행위 등
도 저지될 수 있게 된다.
◆법호사 면허// 범법은 수
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근
절기 위해서는 피의자 요청이나
있을 경우 법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협사 속수법에 이
를 멸망시킨다. 법정이

企劃캠페인 '86 인천 시민 권리 행사 제1회

'86 이전 전국 대회

韓文
卷之三

◇**李敷明씨(변호사)** = 문명사회에서
별어지는 가장자리
만화인 헨리가
고문이다. 인간



◇ 著者注
〔조선설기〕 ≪고종의 재여부는 한나 략의 밀화정 도를 재는 기준 이다. 아무리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earing glasses and a suit.

설리서진 3장은 불이었디 두어
서였던 혼사가 머리차를 낚아쳐며
사진을 뜯바로 쳐다보고 익발질
했다. 의자밑에서 무언을 태우는지
누르스름한 연기가 올라오면서 메
스꺼운 범새가 코를 짚었다. 다른
영화 한 사람의 녹음기를 코앞에 들
아이며 굽은 사람의 이를 데려.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고 말해
라고 울려댔다. 시키는데로 하지
않자 다시 곤봉으로 머리와 어깨
를 마구 때려 정신을 잃고 까무要做好
나. 저지르지 않은 犯行자 백

는 「하나의 事例」다. 지난 82

9월 이 사건이 국제 보도로자 대내외에 전파되면서 조사단은 범인을 확정해 경찰서에 경찰관 6명을 숨기지 않고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의 범인을 확정하고 조사 결과 작성한 이 사전보고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사한 고문의 진상을 고발했다.

「술서기 범인을 시인하지 않자 험사들은 술씨의 팔다리를 수갑과 오라로 끌어 그 사이에 철탑을 기운 뒤 의자 2개에 걸쳐 놓았던 얼굴에 수건을 려고 비누풀과 고춧가루를 물들이 부었다. 술씨가 죄에 스며 드는 물을 살펴버리자 수건을 입안에 밀어 넣고 코와 눈에 고춧가루를 집어 넣은 후 고무호스로 코에 물을 투여하였다. 대론 기구를 써 술씨의 몸에 전기를 밟았다」 이상은 대한민국의 고발문이다.

현사들은 이같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지도양의 「범행」을 허위자백해 「시인」한 자살수와 피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지정했다. 고문에 전례 있는 강인한 처벌을 가진 사람의 죄가 염려도 벗어날 길이 있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억울하게 죄를 부집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외국의 경우

搜查기관의 가혹행위 생각할수없는 일

영국의 수사기관에서
는 고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권이 절저하
게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고 혐행
범이 아니고서는 객관적인 증거
가 제시되기 전에는 경찰이나 검
찰에서 피의자를 구금하는 일조
차 없다. 더구나 자백방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는 피의자로 구
금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변호사
를 통해 보석을 요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로 복역하기 전까지는 정
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재
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고문은 커녕 인격적으
로 대해서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매를 맞았을 때도 그 부
모들은 「유럽」인권위원회에 고발
할 정도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을 절대 보장하고 있는
서구국가에서 고문이
란 상상할수도 없다.더우기 1789
년 시민대혁명을 성취한「프랑스」
에서 이같은 야만적 불법행위가
자행되는것을 아무도 용인하지 않
는다.인간의 억도할수 없는 신성
한 자연권을 엄숙히 선언한「프랑
스 인권선언」은 어떤 사람이라도
법률이 정한바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금 소추되지 않는다.테러
행위나 흉악범죄가 격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며 81년 「미테랑」대통령은
死刑제도까지 폐지했다.수사공무
원의 가혹행위는 형법상 重罪에
해당한다.

<파리=李太勳특파원>

일본헌법 36조는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1백 95조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에 대해 폭행 고문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다. 2차대전 전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나 폐전직후 사회가 안정되지 못할 때는 고문이 가끔 있었으나 최근에는 현저히 개선돼 고문이 자취를 감추었다.

<東京=張誠源특파원>

搜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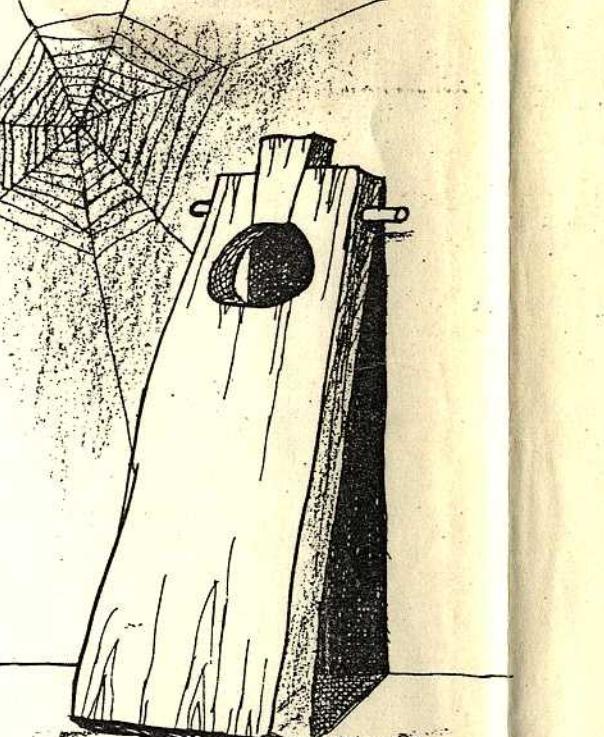
수사를 위해 청탁으로 불가피한
「必要惡」을 이전하느라 한 태도를
취해온지도 사실이다.

拷問은 없어

부산시조 토지조사 치안보루 소속
萬國銀行(38)로부터 재벌기업의 토
(11조 2천)는 규제를
문화해놓고 있다. 현금 8천이나
고문에 의한 과태자는 구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금

과 비단의 저기가 되기도 했다.
75년 2월 28일 박시의 전현자 약
당국회의원 13명이 고문사설을 폭
로하고 나서 정직으로 뿐만 아
니 사회적으론 매우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72년 10월 비상사태선
포전후에 「민족정 철학」 또는 구속
했던 「한국인의 윤리」 「고문설정」
의 층층이에 걸친 서단에 발표하고
한국인 「자체자본」 「민족기운」 「자
주로운정」 「한국인의」 등 철학을
고문을 철학하고 철학했다. 이들이
국정원 「한국인」 「민족기운」 「자
주로운정」 「한국인의」 등 철학을
이로 국정 보도와 「한국인」 「민족기운」 「자
주로운정」 「한국인의」 등 철학을

술자'가 '내가『마르코』를
한다면 '비스마르크'의
자백시킬수 있다'고 자신있어
것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威力를 위협으로 세웠던
현대에는 수사학자들이
중·장·기획부대로 고의자에게
임명장을 주나, 1·2·3·4·5·6·7·8·9·
에 처하도록 규정해 있다. 또
으로 술지게 했을 경우 3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에까지 처해
된다.



寅洙訛

是非 끊이지 않지만 特加法 처벌 받은 수사公務員 한명도 없어

제2부. 다
제3부. 고민을
제4부. 성을
제5부. 삶을
제6부. 이우로
제7부. 고민에
제8부. 갑자
제9부. 사람을
제10부. [提問]에
제11부. [提問]에
제12부. 수사 및
제13부. 담사 등

精神的 피해 平生간다

만에서는 가혹행위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본다.
법률 수사에서 고문(가혹행위)에는 실한 구사를 비롯해 전기고문·불고문·잠기·국부고문·조명고문·죽기·매달기·기압고문·소리듣기·정신실통등 태는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그 기는 것은 물론, 그것이 투수에게 따라 많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례

법률을 써서 재판에 진다. 소송을 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참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예를 통해 강제로 되면 징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시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는 순수성이 제한될 때나 정도의 손해를 끼칠 때 등이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갑작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다. 다만, 가족집회로 이행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게 정신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

한국여가 관광부문	다.
레스토 랑카페	여행객수 80만명
에스프리 카페	국내외 여관객수 80만명
신세계 호텔	국내외 여관객수 74만명
식당	1월~5월 69.74% 증가
1박2 인숙	한국인 100명 중 38.5%인 52명이 숙박하고 있다.
신세계 호텔	호수 52개로 3개가 더
상의 점집	전체 점집 52개 중 38개가 포현점이다.
데 일류호 텔	모두 2000명이 넘는 방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여관	국내 여관 1000여개 중 500개 이상은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여관	한국여관 1000여개 중 500개 이상은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정 대안 혜화
끼다가 규기야 이
까지 이르는 수가 이
후행위의 제해를
도 자존심이 감
수록 그것이 말살
온은 정신과 미해
신 코다는 절도
적됐다. 아울러 노
뿐 아니라 일상이
체를 이처럼 훼손
던 굴기가 많다는
가족 행위는 정신과

두통·우울증·서성기능장애까지
물먹여 심문땐 공포증 생겨 浴室 등
피해자 75% 精神異常증세 호소

도
못
가
야

하게
되다보았지
이다.
고마
갖가지
가족
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평생을
집요하게
페르
梨大醫
李大醫
교수
정신과)는 「진한」 경우
자로
하여금
극도의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그래서 생활이 지시하는 것
혹은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 의지를 역행시키는 방
법으로는 위협·고통을 물리
적인 힘의 행사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의지역성이 지나
나가고 나면 그 대상자는 육
체적·정신적으로 생활적인 측

다. **마른다**
마른다
마른다라고
있

이뇨제 되면 평소와肺胞
가 접촉하는 정상적인 가스
교환도 이뇨지 않기 때문에 호흡장애를 일으켜 폐를 사망까지 이룬다. 肺炎找고 수(咳痰의학)의 설명이 이것인 같다. 肺炎 찾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제거해
놓았을
때를
자주
무언가
끼는
버
아름다운
꽃
방에
나들이
간다.
봉황상자
도
나타난다.
이
여성화
아름다
워
제 속에
고
나온다
화
꽃이
나온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拷問이人體에 미치는 영향

법정서의
재판부
이른바 '고문증'부군으로 불
리는 각종
스트레스성질환이

이번 朴鍾哲군의 경우 처벌
물고문으로 심문을 받은 피해

문구종합제작 원진 Binder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아는 범죄들이 가려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 사회의 요체이며 선량한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범법자가 대로를 활로하는 사회에서는 절대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러나 '절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부족한 수단까지 정당화 시킬수는 없다. 국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들이 '깨끗한 손으로' 범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법칙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갑작사 전이 발생할때마다 수사기관은 증거찾기보다 물의자 수사를 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괴이스러워졌다. 피해자 주변에 매달렸다. 범자들은 사생활과 동일수법으로 불법배울이 수사기 관에 불러가 고용을 칠다. 「

교양과 윤리법을
좋아하는 이가 거지요. 그렇지만 수
사실선에서 부모는 청년은
크게 불러요. 교활하고 악랄한
범법자에게 점이를 끌어 태이
른다고 솔직히 떨어놓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주자. 다른 한
쪽에 이르러야 불기 시작하고
다. 어려움을 참아가는 범인
들을 모두 놓아주어야 해요.
수사실에 10년 이상 종사해
온 고문체험을 비난하는 어른이
비벌거벗는 산활에서 떨어놓을

『惡習』이 부르는 「惡行」

特 別 問 살라제야 한다

追放캠페인

수사관들 賞罰민감 過熱 경쟁

科學的 증거 수집보다 自自 받아 실적 올리기
특수 기관 密室 수사도 拷問 유혹 부르는 要因

두 고문경찰이 수간과 견찰
조사를 빌고 있는 협동보교도
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문
을 조작해온 「밀수수사」를 수
사풀통가 개혁해야 한다는 데
론이 일고 있다.

막아버리다면 밀수수사와 다른
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속피의자와 接觸交通権은
인권옹호와 이처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혈사소송법 89조
에도 구속되고 있은 범죄의 범
위내에서 태인과 접촉하고 서
류 또는 물건을 접수하며 의사
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교
구속자의 자유로운 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 참여를 보장된다.

83년 4월 손根本不씨 사건이 터
졌을 때 경찰은 △인권보호의식
의 미흡 △과학적 수사 방법의
미숙 △수사 과정의 지도감독 소
홀이 인권유린 수사를 빚는 요
인이라고 보고 수사경찰의
질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력 발표했다.

전수사요원에 대한 적성검사
를 실시 포악하고 자제력이 없
는 수사 요원은 배제하며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또 조사실
에 CCTV를 설치해 수사과
정을 감독하고 영상증명과 일
상수사를 없애겠다고 다짐했
다. 그러나 뼈아픈 교훈에서 나
온 다짐은 쉽게 잊히지 않고 개선
방안도 얼마 뜻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朴주의 고문경찰
부서는 다시 출체부발문 치안부부서는
이번에도 수사체계가 평생암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제는 수사장비나 제도의
비에 있다기보다 일선수사관을
의 탄생에 정은 인권경시의식
라도 가는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아 방아내에 빠져나
그리고 그다지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아 방아내에 빠져나

▲ 特別取材班